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202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8호, 2021. 11. 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8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게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직접 판매하는 투명포장 자연산물에 표시 예외를 두는 한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령·고시 인용조문과 일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I. 1. 2, 3, II. 1. 가, 자, 카, 거, 2. 다)

-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식품유형, 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 2)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 3) 급식 용도의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안내기준 신설(안 II. 5 신설)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다류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문구,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3)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III. 1. 가, 나, 다, 사, 자, 차, 카, 거, 더, 머, 서, 어, 저, 커, 4. 가)

- 1) 유산균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자, 캔디류, 빙과 등에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 2) 코코아가공품류의 영양성분 및 내용량 표시 규정 정비
- 3) 고올레산 콩에서 추출한 콩기름에 대한 올레산 함량 표시 신설 및 식용유지류의 기타표시사항 일부 자구 수정
- 4) 음료류의 일자표시 중 일부 자구수정
-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영양식품, 주류, 유가공품류, 즉석식품류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사항 등 규정 신설
- 6)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 및 자구수정
- 7) 벌꿀류의 표시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 8) 달걀 껍데기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추가 및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사육시설 10m² 미만 사육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예외 규정 신설

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III. 1. 퍼)

- 1)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에 포장일을 추가하여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생산연도 등을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함

2)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진공포장 제외)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3)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마.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바)

1)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위탁제조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원재료명 세부표시기준 중 타 고시 인용문구 자구수정

바.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안 별지 1 1. 아. 3) 다) 신설]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설탕 무첨가"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식품 제조시 당류 첨가 여부에 따라 '설탕 무첨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 필요

3)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기준 신설